#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0년 1월)

2020. 1 / 저작권상담팀(☎ 1800-5455)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 순위 | 저작물 종류별 | 기타 |
|---|---|---|
| 1 | 영상 | 이용 |
| 2 | 폰트 | 등록 |
| 3 | 사진 | 침해 |
| 4 | 캐릭터 | 허락 |
| 5 | 프로그램 | 유튜브 |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네이버 '나눔손글씨 붓체' 글꼴로 작성

## <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

○ (영상) 동요와 율동으로 이루어진 영상의 저작권은 동요의 작곡가 및 작사가에게 있는가?

– 동요의 작곡가 및 작사가는 영상에 이용된 동요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질 뿐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있다.

○ (폰트) 상가 건물의 간판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도 간판에 사용된 글꼴(폰트)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은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폰트)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글자체(폰트 도안)만을 이용한 것은 글꼴(폰트)파일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진)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는 사진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 저작권법 제24조의2[1]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사진에 공공누리[2]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공공누리 유형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캐릭터) 재직기간 중에 디자인한 캐릭터는 나의 저작물이므로 퇴사 후 해당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도 문제없지 않나?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3]에 해당한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므로[4], 업무상저작물이고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해당 캐릭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 해외업체로부터 프로그램 무단이용에 따른 경고장을 받았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므로[5],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 기타 주요 상담 >

○ (이용) 공유마당에서 제공되는 만료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 공유마당을 통해 제공되는 만료저작물의 경우 출처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는 무료인가?

– 저작권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는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가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므로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 (침해)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발견했는데 일반인이 저작권자를 대신해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로서 원칙적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6].

– 다만,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업무는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허락)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가?

–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7] 구체적인 이용허락의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구두,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8]. 이때, 저작권이 신탁된 저작물은 신탁단체를 통해 허락받을

---

6)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수 있으며 신탁되지 않은 저작물은 대리중개업체나 저작권자 개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링크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 유튜브 영상을 인터넷 주소(URL) 형태로 공유하는 '직접링크'[9]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네이버 '나눔스퀘어 라운드체' 글꼴로 작성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0년 1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서면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내 자료공간(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